

비농경지 환지지정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20일
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

토지명세

[illegible]

토지 소유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25조제5항 단서 및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전 토지의 용도와 다른 환지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(동의)합니다. 년 월 일 신청(동의)인 (서명 또는 인)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	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 위의 신청(동의)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성 명 (대표자) 주 소 (서명 또는 인)
--	---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다른 용도 환지지정 신청(동의) 안내	
제출 및 처리기관	국가·지방자치단체, 한국농어촌공사, 토지 소유자
근거 법조문	○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5조(환지계획)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생활환경정비 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. ○ 「농어촌정비법」 제34조(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) ⑤ 환지계획 구역에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 외의 특정 용도 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